

HANA FX TRADING SYSTEM 거래약정서

이 약정서는 “약정 고객”과 (주)하나은행 (이하“은행”이라 함)이 제1조의 거래를 함에 있어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적용 거래)

이 약정서는 “약정 고객”(이하에서, “약정 고객”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약정서 제4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은행”의 고객을 의미함)과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은행”의 『HANA FX TRADING SYSTEM』을 이용한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 (“외환스왑거래” 포함)에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외환거래관련 법규,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그 밖의 상관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인터넷 FX딜링거래”란 인터넷을 통한 “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 “시장평균환율”거래를 말한다.
2. “현물환(Spot)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당일(value today) 결제, 다음 영업일(value tom)결제 혹은 다음 영업일의 익영업일(value spot)결제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선물환(Forward)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장래의 특정 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외환스왑(FX Swap)거래”라 함은 만기가 다른 두 개의 외환거래가 하나의 외환 상품으로 구성된 외환거래를 말한다.
5. “금융시장”이라 함은 “은행”이 본 조 제1호의 거래를 행하고 있거나 행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금융시장, 기타 동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모든 금융시장을 포함한다.
6. “시장가격” 또는 “시장환율”이라 함은 거래체결시점에서 실제로 “은행”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는 환율을 말한다.
7. “시장평균환율(Market Average Rate, MAR환율)”이라 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은행들이 거래한 달러 원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된 환율로, 외국환거래 증개회사들이 당일 중 계산하여 각 외국환 은행에 통보한 환율을 말한다. “시장평균환율”거래는 시장평균환율 현물환 (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결제) 거래와 시장평균환율 선물환 거래를 포함한다.
8. “반대거래”라 함은 당초거래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방향의 거래를 말한다.
9. “조기청산거래”라 함은 “약정 고객”이 반대거래의 방법으로 본 조 제1호의 거래를 만기일 전에 종료시키는 거래를 말하며, “만기청산거래”라 함은 “조기청산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만기일에 종료 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3 조 (적용법규 등)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현물환거래약정서’,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들 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4 조 (약정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 약정의 체결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HANA FX TRADING SYSTEM 거래약정서』를 기명 날인하여 제출 한 후, “은행”이 승낙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이 약정에 의한 “인터넷FX딜링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고객”은 “은행”의 관리 영업점에 별도 서면(『HANA FX TRADING SYSTEM이용신청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약정 고객”은 서면으로 이 약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인터넷 FX딜링거래”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해지 가능하다.
- ③ “인터넷 FX 딜링거래”의 이용 신청과 해지는 “은행”의 관리 영업점에서 한다.

제 5 조 (“약정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관련 책임)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약정 고객”이 입력한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및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인증방법으로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 “은행”은 “약정 고객”으로 인식하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이와 같이 처리한 경우 비밀번호 등의 도난, 분실 그 밖의 사고로 인해 “약정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 ① “약정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거래시간과 거래한도 이내에서 “인터넷FX딜링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 한도는 “약정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HANA FX TRADING SYSTEM』을 통하여 “약정 고객”에게 안내한다.
 1. 모든 “인터넷 FX딜링거래”는 “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은행”은 “약정 고객”별로 개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현물환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 담보금 등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3. “선물환 거래” 및 “외환스왑거래” 시, “은행”은 보증금 적립비율에 따라 “약정 고객”의 파생상품 보증금 면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증금 등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보증금 적립 비율을 사전에 “약정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4. “인터넷 FX 딜링거래” 이용 시간은 『HANA FX TRADING SYSTEM』에 게시하며, “은행”은 이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약정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거래주문 및 체결)

- ① 주문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인터넷FX 딜링거래”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 ② 지정가 주문은 시장환율이 “약정 고객”이 지정한 환율 이상 또는 이하로 변경되었을 때 주문이 체결된다.
- ③ 지정가 주문의 주문 유효기일은 주문 당일로 하며, 주문 체결 가능 시간 종료 (서울외환 시장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장가 주문 거래와 지정가 주문 거래 용어해설 및 예시]

<용어 해설>

시장가 주문 거래는 “은행”이 시장 환율에 연동한 환율을 제시하고, “약정 고객”은 제시된 환율을 참조하여 가격을 정하지 않은 채 거래 수량, 거래 방향을 정하여 주문을 낼 경우 주문을 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의 거래이다. 단, **급격한 시장 환율의 변동 시 주문을 넣은 시점의 가격인 원래 매매 의도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과의 차이인 슬리피지 (Slippage)**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이 슬리피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며 “은행”은 이 슬리피지의 범위를 “약정 고객”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HANA FX TRADING SYSTEM> 내 게시한다. “약정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지정주문하고 시장환율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방식의 거래를 지정가 주문거래라 한다.

<시장가 주문 예시>

매매의도시점과 실제 체결시점의 짧은 시간 동안에 시장가격이 급 변동할 때 매매의도가격이 1130원이고 “은행”이 고지한 슬리피지가 0.3원일 경우 시장가 주문은 1129.7원과 1130.3원 범위 내에서의 시장가격으로 체결되고, 만약 시장가격이 1135원으로 급등하여 슬리피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 매매의도가격이 1130원이었으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BEST PRICE)이 1129.8원인 경우에는 1129.8원으로 체결되고 또는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1130.2원인 경우에는 1130.2원으로 체결된다.

<지정가 주문 예시>

1130원 지정가 매도 주문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여 지정한 가격인 1130원에 도달할 때 1130원 또는 1130원 이상의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도계약이 체결된다.

- ④ “인터넷 FX 딜링거래”는 시장환율에 사전 협의된 수수료를 가감한 환율로 체결한다.

제 8 조 (거래중지)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의 급등락 및 시스템 오류의 경우 “은행”은 시장 환율의 제시를 중지하거나, “인터넷 FX 딜링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약정 고객”에게 서비스 일시 중단에 대한 사실 및 중단 사유 해소 등을 『HANA FX TRADING SYSTEM』을 통해 안내하고,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약정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급방법)

- ① “약정 고객”과 “은행”은 “인터넷 FX딜링거래”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② “약정 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 지급 (gross payment)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차액 지급(net payment)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결제일은 “은행”의 영업일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은행” 영업시간 이내)

제 10조 (시가평가)

- ① “은행”은 매 영업일에 “약정 고객”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환거래의 명목금액에 대하여 원 거래 가격과 평가시점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한다. 이 때 적용하는 현재가치 환산율은 원화 (KRW) 통화스왑금리 등의 금리를 사용한다.
- ② “은행”은 제 1항의 시가평가결과를 전자메일 등 “약정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약정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제 1항의 시가평가결과 평가손이 보증금 입금액 또는 손실한도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고객”은 보증금 추가 적립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전에는 추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 “은행”은 평가손의 해소와 관련하여 거래 상태,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 (반대거래)

- ① “인터넷 FX딜링거래”의 만기 결제 시, 결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은행”은 반대거래로 해당 “인터넷 FX 딜링거래”를 종결한다.
- ② 제 10조의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손이 보증금 입금액 또는 손실한도약정 금액을 초과하여 반대 거래가 필요한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약정 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고지한 기간까지 그 부족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약정 고객”이 “은행”이 사전 고지한 기간까지 그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반대거래를 통하여 외환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금액이 해소될 때까지의 반대거래 순서는 평가손 금액이 큰 순으로 하며, 반대거래 결과는 전자메일 등 “약정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약정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 ③ 반대거래 환율은 청산 당시의 시장환율로 한다.
- ④ “약정 고객”은 제 3항의 반대거래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한도거래의 경우 발생손실 전액을, 보증금 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공제한 손실금액을 당일 중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는 실제 납입일(불포함) 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_____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불이행 등)

- 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제1항 부터 제 5항의 각호의 사유가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은 “약정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유 및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즉시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약정 고객”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감축,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 고객”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약정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할 경우, 지급 또는 상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한다.

제 14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조 (“은행”의 책임 등)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약정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지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약정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약정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약정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해킹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약정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은행”은 “약정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약정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은행”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약정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유의사항]

HANA FX 거래 체결 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HANA FX TRADING SYSTEM』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약정서 및 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와 본 약정서 사본을 수령 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약정 고객”:
_____ (인)

거래처 확인 및 인감대조 확인

- 상기거래자가 “약정 고객”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자필로 기명 및 날인(서명)하였음 확인

확인자 : 직 · 성명 _____ (인) 점검자 : 직 · 성명 _____ (인)

